

공고 제 2019-5 호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01월 22일

양강면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전**	전** 1975-07-18	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가동2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1-17